

심

프

교정 국어

주

2009 점유 · 소유
문제 + 해설

간

[0주차]

지

오르비 심프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0. 9월 [27~31]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3.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4.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1~5]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문의 화제를 드러내는 문단입니다. 점유와 소유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지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당연히 핵심 키워드는 점유, 소유가 되겠고, 이 둘을 구분하는 비교지점을 잡는 등 구분을 해줘야겠네요. (실제로 점유와 소유를 뽀세게 구분하는 비교지점은 나오지 않지만, 처음 이 문단을 읽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멘트를 넣습니다) 특히 이걸 마지막 문장에서 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럼 한 문장 썩 살펴볼게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물음으로 제시되는 문장은 무조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물음을 던지는 문장에 대해 부정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럼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neq$ 물건의 주인’이겠군요. 이 둘을 구분해야겠습니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점유와 소유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문단 해설에서도 말했듯이 이 두 단어가 핵심 키워드일 거라고 했어요. 그럼 정리를 해야겠죠.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상태, 소유는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는데 사실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두 개를 따로 정의해줬으니 이해가 어렵더라도 구분은 해줘야겠네요.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실전에서는 앞에서 말해준 정의와 점유 $\neq$ 소유라는 점만 잡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해볼게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첫 번째 문장을 떠올려봅시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점유와 소유의 정의를 이미 체크했습니다. 그럼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 점유자
물건의 주인 = 소유자

라는 사실까지 생각해볼 수 있고 점유자와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점유와 소유의 정의가 딱 봤을 땐 정말 안 와닿지만 앞에서 던져준 물음과 함께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문장의 물음이 약간의 예시처럼 작용한 것이네요! 그럼 점유와 소유에 대한 정의를 약간 구체화한 상태에서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점유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있는데 이게 묘하게 다릅니다. 일단은 두 점유 모두 앞에서 언급한 ‘점유’라는 점을 인지하고, 앞에서 말해준 정의를 끌고 와야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구조화해주면서 읽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두 점유의 비교지점을 잡는 게 이 문단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점유가 소유를 ‘공시’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점유가 곧 소유자(누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인데, 이것 잘못 정리하면 점유=소유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 말한대로 점유와 소유, 점유자와 소유자는 엄밀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한 문장씩 읽으면서 이해해봅시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의 정의를 말해줍니다. 그냥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였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어감상 직접점유는 직접 갖고 있는 등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나 봅니다. 단, 물리적 지배도 사실상의 지배라는 점을 머릿속에 끌고 내려오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요즘 평가원에서 이런 방식의 이해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향미생물 화학제 지문도 뒤에서 산화제, 알칼리제 등 무슨 종류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향미생물 화학제이기 때문에 병원체의 공통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듯이요! 이외에도 비콘 지문, 미토콘드리아 지문 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네 직접점유와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뭘지는 모르지만 우선 생각해볼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봅시다! 앞에서 직접점유는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었고, 이것도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점유 중 하나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본대요. 점유로 본다는 거죠?(점유의 정의였으니까요) 그러면 직접점유는 ‘물리적’·사실상의 지배, 여기서 나오는 다른 점유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실상의 지배이겠군요. 두 점유 간의 비교지점을 잡아줍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네 위에 있는 모든 문장을 하나로 정리해줍니다. 실전에서는 이 문장을 보고,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구분해주시면 돼요. 비교지점은 위에서 다 잡았죠? 간결하게 정리를 다시해볼게요.

직접점유 : 물리적 지배
간접점유 :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두 문장 한 번에 볼게요.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하는데, 이 공시는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알려준다고 해요. 말 그대로입니다. 점유는 어떤 물건의 소유자를 공시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말이네요.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 지를 알려주니까 그 권리가 누구의 것인지,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공시해준다고 합니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도 모두 점유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소유권) 공시 기능을 하겠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대부분의 동산(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대요, 일단 점유가 소유를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동산이라는 점을 체크했다면, 점유가 소유를 공시하지 않는 동산의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실전에서는 어렵더라도 공부할 때는 충분히 할만하죠? 그리고 일단 화제가 ‘점유와 소유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였기도 하구요. 그럼 이 생각까지 해주면서 다음 문단을 읽어봅시다.

* 동산의 의미를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이 지문을 풀 때는 ‘피아노, 금반지, 가방’과 같은 것들이라고 처리해주면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른다면 이 정도 어휘는 사전을 찾아보고 알아둡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하아.. 악랄한 그 문단이 나왔습니다. 너무 길어요.. 앞에서 정리한 간접점유의 개념과 점유로 소유가 공시되는 경우 중 소유가 이전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또 두 가지네요...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입니다. 실전에서 사실 이 문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딱 보면 ‘둘 다 간접점유를 넘겨주는 거고 반환청구권이 넘어가는 건데, 그럼 반환청구권 양도만 있으면 되지 점유개정이라는 녀석은 왜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 예요.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문제도 결국 실전에서 풀어낸 사람이 있고, 풀어냈어야 합니다.

먼저 점유 중 간접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으니까 반환청구권이 이전되는 것이겠네요.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를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딱 보이는 두 가지 차이점이 계약이 몇 명 사이에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점유개정은 2명, 반환청구권은 3명이네요. 앵?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지만 이 문단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물건을 주는 놈(양도인)이 물건을 직접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잡으셨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 문장씩 뜯으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말이겠군요. 공시가 무슨 뜻인지 다들 기억하고 있으시죠?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논의의 범위를 다시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계속 점유와 소유가 같은 경우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화제 기억하시죠? 결국 점유와 소유는 다른 것이고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주셔야 해요! 자칫 놓치면 점유와 소유가 같은 개념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해요.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점유 중에서도 간접점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시를 이야기 합니다. 계속 논의의 범위를 줄이고 있어요. 간접점유도 점유이기 때문에 ‘점유로 소유가 공시되는 대부분의 동산’에서는 역시나 소유권과 소유자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간접점유는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도 앞에서 말했듯이 ‘반환청구권 양도는 알겠는데 점유개정은 뭐하는거지..? 뭐가 다른거지?’ 싶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해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 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예시를 던져줍니다! 예시는 우리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출제자의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해봅시다. A가 B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했대요. 그렇게 B는 A에 대해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일단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았으니 간접점유가 옮겨간 점유 인도의 경우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도인, 그러니까 주는 놈이 물건을 ‘직접’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B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갖고 있는 거죠? ‘간접점유’를 넘겨 받아서요!

점유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경우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대부분의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도 앞에서 언급한 것 중 하나인 피아노네요. 그러니까 B는 A로부터 간접점유를 넘겨받았고, 그 간접점유가 피아노의 소유를 공시해주니까 소유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고로 B의 소유를 알려주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헛갈립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B는 A로부터 간접점유를 넘겨받는 점유 인도를 했고, 그걸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소유권 공시). 그리고 그 물건은 A가 직접 갖고 있었죠? 물건 자체는 안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을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건? A이겠죠! 슬슬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A는 직접점유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고 조금 더 추가설명하고 정리할게요.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각이 나옵니다. 양도인인 A가 직접점유를 하고 양수인인 B는 간접점유를 넘겨받아서 점유 인도가 일어나고 동시에 소유권이 공시되기 때문에 소유권도 같이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이걸 점유개정이라고 하네요.

자 일단 계속 제가 소유권이랑 점유를 따로따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점유와 소유는 다른 겁니다! 명확히 다른 개념이고 점유가 소유를 ‘공시’하는 경우일 뿐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검사검사 화제도 떠올려봅시다.

점유랑 소유가 다른 경우였습니다. 이걸 왜 말할까요? 점유개정도 사실 그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는 직접점유를 유지하고 B는 간접점유를 인도받아서 B의 소유권이 간접점유로 공시되었다고 이해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직접점유자(A) $\neq$ 간접점유자(B, 양수인)

간접점유자(B) = 소유권자(B)

직접점유자(A) $\neq$ 소유권자(B)

***직접점유자(A) = 양도인(A, 원래 소유자)**

인 겁니다.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네요! 화제 기억하시죠? 평가원은 변태가 맞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완벽한 겁니다.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다르고, 간접점유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군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반환청구권 양도를 이해하러 가봅시다. 점유개정을 이해했으니 반환청구권 양도도 충분히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점유개정과 어떤 방식으로 다른지를 중심으로 알아봅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번에도 역시나 간접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가방을 D에게 맡겼고 C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게 간접점유였으니까 C는 간접점유자입니다. 그리고 C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한대요. 역시나 소유권을 양도를 공시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겠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C가 소유자이지만 가방을 직접 갖고 있지 않죠? D가 갖고 있어요! 그럼 D가 직접점유자인 거군요?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앵,,? 달랑 이게 끝이라구요...?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하나씩 따지면서 읽어봅시다.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 자체는 C랑 E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원래 소유자인 C가 양도인이 되어서 간접점유를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E는 D한테 가방을 달라고 할 반환청구권만 넘어가는 거죠. C는 가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E도 마찬가지로 계약 이후 반환청구권 얻은 것입니다. E가 반환청구권(간접점유)을 가지는 것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었으므로 소유권자는 E가 되겠고, D는 여전히 가방을 직접 갖고 있으므로 직접점유자인 겁니다.

여기서 점유개정과의 차이점이 하나 드러나네요. 점유개정은 양도인이자 원래 소유자인 A가 물건을 직접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또 빌리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도 A가 직접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양도인인 A가 직접점유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도인인 C가 간접점유만 할 뿐, 직접 갖고 있는 사람인 직접점유자는 따로 있었어요. 그게 D였죠. 아 그럼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의 차이는 **양도인이 직접점유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나눌 수 있겠네요!

반환청구권의 경우는 직접점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양도인(C), 양수인(E) 이외의 제3자(D)였죠? 그러니까 인원이 3명이었던 거고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직접점유자(A)이었으니까 인원이 2명이었던 거네요. 실전에서는 이 인원 수의 차이를 먼저 잡고 D가 직접점유자인 것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합니다. 해설을 쓸 때는 앞에서 준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설명하려고 바로 들어갔어요.

아무튼 정리하면

직접점유자(D) != 간접점유자(E, 양수인)

간접점유자(E) = 소유권자(E)

직접점유자(D) != 소유권자(E)

***직접점유자(D) != 양도인(C)**

역시나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점유개정은 직접점유자가 양도인, 반환청구권 양도는 직접점유자가 제3자인 경우입니다.

추가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 둘 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는 것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간접점유자가 되고 동시에 소유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의 비교지점을 차이점과 공통점으로 하나씩 잡을 수 있겠죠?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일단 문단의 시작이 물음의 형태입니다. 당연히 눈 여겨 봐야겠죠?(이때는 물음의 내용이 부정되진 않네요!) 그렇게 읽어보니 선의취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애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때’에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네요. 원래 소유권 양도는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애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물음의 문장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때’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추가로, 점유와 소유가 다르다는 점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네 논의의 범위를 역시나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으로 줄여줍니다. 당연히 소유권(양도) 공시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양수인이 충분한 주의를 하고 소유자가 아님을 모르고 계약을 해서 점유 인도로 공시가 되면 소유권 취득이 된대요! 소유권 양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의취득입니다.

아까 문단 해설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유효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때도’ 언급된 조건을 만족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합니다. 예외 상황이네요.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앗.. 그런데 선의취득에도 또 예외가 있습니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일어나지 않는대요. 다시 말하면 간접점유를 넘겨주는 다른 경우인 반환청구권 양도의 경우에는 이게 인정된다는 뜻이겠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똑같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상황에서 충분히 주의를 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 줄 알았고, 유효한 양도 계약을 했다면 점유 인도는 이루어진 것일까요?

생각 다 하셨나요?

네 점유 인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점유 자체는 양도인이 소유자인지와 무관하게 양수인이 획득할 수 있는 거 예요. 점유랑 소유랑 다르다는 점 계속 언급했었죠? 점유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경우는 점유랑 소유랑 두 개가 같이 이전되는 경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점유 = 소유가 아니잖아요. 조금 바꾸어 말하면 반환청구권 = 소유권이 아니듯이요. 반환청구권은 간접점유였지 소유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때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점유개정(점유 인도)으로 인해 소유권이 공시되지 않아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간접점유 그 자체는 인도될 수 있다고 보아야하는 겁니다!

추가로 앞 문장 해설에도 가볍게 언급했지만, 점유 인도와 소유권 이전은 따로 봐야합니다.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여기서도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이라며 점유 인도로 공시는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난 아니네요.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어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제3자겠죠?)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화제와 앞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선의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앞의 내용과 비교지점이 잡힙니다. 선의취득을 포함해서 이때까지는 ‘점유’로 공시되는 경우였는데 선의취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애네들은 점유 이외에 ‘등록’, ‘등기’로 공시되는 경우입니다. 무엇으로 공시되는지에 대한 비교지점이 잡혀요.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점유와 소유에 대한 내용이네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 VS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이니까요.

추가로 2문단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훨씬 잘 읽히는 포인트도 등장하네요(기억나시나요? 안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따가 문장 해설하면서 다시 언급할게요)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선의취득 대상이 아닌 경우를 던져줍니다. 크게 등기와 등록으로 공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식된 정의로 용어의 정의도 함께 제시해줍니다.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고 문장도 간결해서 정의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문단 해설에서 언급했듯이 선의취득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였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된대요. 역시나 여기서 말하는 공시는 소유권에 대한 공시일 것이고, 공시 방법에 대해서 비교지점이 잡히네요.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과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의 예시를 함께 던져주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을 보니까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이때까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였고 그게 ‘대부분의 동산’이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럼 점유로 공시되지 않는 동산도 있을까?’와 같은 생각을 했었죠. 여기서 딱 등장하네요. 자동차나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등기로 공시된다고 합니다. 역시나 점유로 공시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겠군요.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네 선의취득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선의취득을 인정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댔어요. 그래서 고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선의취득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게 고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정도로만 파악해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그냥 받아들이셔도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히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하나 짚고 가야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 안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이 지문에서 ‘거래’라고 할만한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맞아요. 소유권 양도 계약 정도가 거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래 안전은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소유권 양도 계약이 안전하게(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럼 거래 안전에 치중한다는 것은 거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치중했다는 말일 테고, 말을 바꾸면 소유권이 무사히 이전되는 것에만 치중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무사히 이전된다면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안전이라는 것과 소유자의 권리 보호는 양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는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소유자의 권리 보호는 경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에 치중하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문이 어렵습니다.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캐치하고 서로 다른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고 읽었어야 해요. 또, 지문에서 논의하는 범위와 거기서 등장하는 비교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 ⑤

① 점유 중 직접점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가방을 물리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있으니 직접점유자입니다.

② 네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 인도 사례에 해당하는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제대로 읽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직접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랐습니다. 간접점유자와 소유자는 같았지만요. 직접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자이지만,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어요.

③ 마찬가지로 가방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가 필요하겠네요.

④ 점유의 기능을 물어보네요. 점유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기능이 있었죠? 그리고 가방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대부분의 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점유가 소유권을 공시하는데, 이게 마치 ‘점유=소유’처럼 보이기도 해서 ‘점유=/=소유’라는 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는 게 중요하다고 지문 해설에서도 얘기했었죠?

⑤ 이 지문에서 중요했던 점유 인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문단 앞부분에 대놓고 있네요. ③번 선지랑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6. ⑤

①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선지네요. 물리적 지배는 직접점유였습니다. 간접점유는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였죠? 너무 쉽네요.

② 점유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접점유도 결국 점유이기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어요. 피아노도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이었어요. 공시 방법 맞습니다.

③ 꼭 그런 건 아니죠? 직접점유자만 있어도 돼요. 애초에 직접점유랑 간접점유는 같은 점유이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독립시행이었습니다. 직접점유는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거고 간접점유는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거였죠. 둘을 잘 구분했다면 쉽게 고를 수 있어요.

④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넘겨받아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 두 가지 있었죠? 둘 다 ‘직접점유자=/=소유자(=간접점유자)’였어요. 이것도 실전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도 점유개정의 정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유개정이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고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 점유개정도 결국은 간접점유가 인도되는 경우였어요. 그렇게 간접점유를 넘겨주면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거니까 ‘직접점유자=/=소유자(=간접점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웠다면 그냥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이 문장만 보고도 알 수 있겠네요. 간접점유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어요.

⑤ 또 점유의 공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피아노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공시되려면 직접 점유든 간접점유든 ‘점유’를 갖추어야 하겠네요. 정답입니다.

7. ②

① ㉠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는 등기·등록이었죠?

② 선의취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인정하게 되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하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뜻이겠군요.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아니지만, 수능 국어에 한해서는 충분히 허용가능한(?) 추론입니다. 특히 이 지문에 한해서는 큰 논리적 오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 해설에 더 꼼꼼히 적어놨으니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③ ㉡은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으로, 등기로 공시되기 때문에 점유로 공시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의 여부에서도 같겠죠.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는 말 자체도 애매합니다.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직접점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직접점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간접점유로 공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④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 물어보는 선지네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선의취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은 선의취득 인정이 안 되는 경우죠? 지웁시다.

⑤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된다는 것은 결국 간접‘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것이라는 소리인데, ㉡은 아니죠? 등기로 공시되는 경우입니다.

8. ③

<보기> 먼저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갑-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양도 계약은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입니다. 양도인인 갑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한 것이니까, 양도인인 갑이 직접점유를 유지하고 을은 그것을 넘겨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권 즉, 간접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을-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양도 계약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네요. 양도인인 을이 직접점유자가 아니라 간접점유자인가요. 직접점유자는 갑이겠죠? 보니까 병과 계약하면서 을이 갑에게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주었’네요. 여기서 갑이 직접 금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병도 결국은 갑으로부터 금반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점유자가 되는 것이겠군요. 간접점유가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선지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은 결국 일반적인 소유권 양도 계약의 상황이라는 것이네요.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야 했어요. 그럼 처음 계약할 때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랑 계약을 했다는 소리이니까 을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졌고, 소유권이 양도되었을 것이며, 다시 을과 계약한 병은 마찬가지로 간접점유자가 되면서 소유권을 획득하겠군요. 맞는 말입니다.

② ①번과 같은 상황입니다. 풀이도 같은 맥락이네요. 갑이 소유자이고 양도인이었으니까 을이 직접점유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점유를 통해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선의취득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겠군요. 선의취득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계약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는 경우였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는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을이 소유권을 획득했는지 알아보려면 ‘갑-을’ 간의 계약을 봐야겠군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경우였습니다.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점유 인도를 받았을지언정 소유권 양도는 받지 않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선지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외에 해당하는 선의취득에 대한 내용을 잘 읽는 것은 물론 <보기>의 상황도 잘 파악했어야 합니다.

④ 역시나 선의취득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결국 점유 인도는 한 것입니다. 제가 지문 설명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했던 포인트죠. 지문의 화제로 잡기도 했구요. 점유는 소유를 공시하는 기능을 할 뿐, ‘점유=소유’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점유 인도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유 인도 자체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점유와 소유를 구분했다면 쉽게 풀 수 있었고 그걸 하지 못했다면 정말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화제의 중요성 다시 배우고 갑시다!

⑤ 그냥 대놓고 선의취득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을-병’ 사이에서 일어난 계약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공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겠네요. 누구의 소유권이냐 묻는다면 갑, 을 누구도 아닌 제3자이겠지요?

9. ①

어휘 생략